

의안번호	2124241
의 퇴 인	변재일의원
회 답 일	2023.09.20
추계번호	23B39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09억 5,000만원, 2029년 1,401억 8,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304억 6,300만원(연평균 1,260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¹⁾에 따라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므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증가액은 각각 표시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안 제26조의4)	110,950	117,986	126,955	134,389	140,183	630,463	126,093

- 주: 1.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은 다음과 같음

[표 2]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증가액: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안 제26조의3)	110,950	117,986	126,955	134,389	140,183	630,463	126,093

- 주: 1. 전국의 환경영향평가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85개소와 향후 5년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20개소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2025~2029년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모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1)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2 신설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²⁾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또는 신고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함(제1항)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함. 단,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와 인접한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26조의3 신설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1항) • 부담금 및 가산금, 연체이자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26조의4 신설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제1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6조의3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및 가산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의무규정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6조의2제2항(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범위 결정 시 공청회 개최	-	• 환경부에 따르면 안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비용은 기 편성된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2	안 제26조의2제1항(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안 제26조의3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의 부과·징수) 안 제26조의4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 가능하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규모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³⁾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3.8.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안 제26조의4)

□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대규모 민간 폐기물처리 시설⁴⁾ 설치·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 주민지원사업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및 매립 시설) 168개소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85개소(소각시설 53개소, 매립시설 32개소)이며, 최근 3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최근 3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2019~2021년

(단위: 개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소각 시설	4	1	1	2.0
매립 시설	1	3	1	1.6
합 계	5	4	2	3.6

주: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 자료(한국환경공단)

자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제출자료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

※ [참고자료]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

□ 본 추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설치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에도 동일하게 주변지역

4) 안 제2조(정의) 3.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처리시설(그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추어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지원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

- 현 시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예측하기가 곤란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요율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정될 부담금 징수요율은 위탁처리 수수료⁵⁾의 100분의 10으로 가정함
-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⁶⁾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일정 비율(3~10%)⁷⁾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에 전액 사용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5)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량 × 처리단가

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가. 공사관련 전입금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특별시 추가 전입금

7)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별표2]

-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제2조제1항제1호다목관련)

구 분	조 성 비 율
2개자치구이상 광역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1개자치구 단독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7
주변영향지역내에 거주 주민이 5,000명 미만인 경우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3

[표 4] 서울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 중 반입수수료 징수액 및 집행내역: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강남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2,425	2,782	3,079	3,159	3,367
	사업비 집행액	8,927	8,423	8,412	8,404	8,855
노원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1,598	1,879	2,034	1,996	2,282
	사업비 집행액	5,795	6,535	6,607	7,809	8,089
마포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69	98	80	82	143
	사업비 집행액	—	—	—	—	—
	운영비 (주민지원협의체)	67	105	79	81	143
양천구	반입수수료 징수액	1,067	1,103	1,322	1,255	1,435
	사업비 집행액	5,740	8,923	8,671	5,740	3,792

주 1. 마포구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인근 주변영향지역(300m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집행중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https://rrf.seoul.go.kr/>)에서 발체

- 최근 3년간 설치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균 설치 개소수(3.6개소)를 참고하여 향후 5년 동안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연간 4개소로 가정
- 한국환경공단 제출자료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총 시설 수·총 처리량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의 처리단가(2022년 기준)를 참고함

가. 기존의 85개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85개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모는 5,538억 5,800만원임

- 추계 방법은 시설 수에 평균 위탁처리 수수료(처리량×처리단가)를 곱한 값에 부담금 징수요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
- 1개소당 처리량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처리단가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환경영향평가대상 85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① 소각시설

구 분	총시설수(개소)	총 폐기물 처리량(톤/년)	1개소당 처리량 (톤/년)	처리단가(원/톤)
계	53	1,627,000	30,698	286,000
수도권	20	475,000	23,750	283,000
충청권	12	431,000	35,916	255,000
호남권	6	176,000	29,333	290,000
영남권	15	546,000	36,400	258,000

주: 1. 시설 수 및 처리량: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2. 처리단가(2022년 기준):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에서 7~20개 사업장 및 6~10개 폐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권역별, 종류별 전체 폐기물의 평균 처리단가임

② 매립시설

구 분	총 시설 수(개소)	총 폐기물 처리량(톤/년)	1개소당 처리량 (톤/년)	처리 단가(원/톤)
계	32	2,484,000	77,625	206,000
수도권	—	—	—	—
충청권	6	343,000	57,166	216,000
호남권	8	916,000	114,500	201,000
영남권	18	1,224,000	68,000	203,000

주: 1. 시설 수, 허가용량 및 처리량 출처: 2021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

2. 처리단가(2022년 기준):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에서 7~20개 사업장 및 6~10개 폐기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권역별, 종류별 전체 폐기물의 평균 처리단가임

[표 6] 기존의 85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소각 시설	개소수(A, 개소)	53	53	53	53	53	—
	1개소당 처리량 (B, 톤/년)	30,698	30,698	30,698	30,698	30,698	—
	처리 단가(C, 원/톤)	311,298	317,836	324,192	330,676	337,290	—
	소계 (D=A×B×C, 백만원)	506,479	517,117	527,458	538,007	548,768	2,637,829
	부담금 (E=D×10%, 백만원)	50,648	51,711	52,746	53,801	54,876	263,782
매립 시설	개소수(F, 개소)	32	32	32	32	32	—
	1개소당 처리량 (G, 톤/년)	77,625	77,625	77,625	77,625	77,625	—
	처리 단가(H, 원/톤)	224,222	228,931	233,509	238,179	242,943	—
	소계 (I=F×G×H, 백만원)	556,967	568,663	580,036	591,637	603,470	2,900,773
	부담금 (J=I×10%, 백만원)	55,696	56,866	58,003	59,163	60,347	290,075
합 계(K=E+J, 백만원)		106,344	108,578	110,749	112,964	115,223	553,858

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나. 향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 환경부장관이 향후 5년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규모는 766억 500만원임

- 최근 3년간 신설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평균 설치 개소수가 약 4개소이고, 기존의 소각시설(53개소)과 매립시설(32개소)의 비율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 매년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방법은 시설 수에 평균 위탁처리 수수료(처리량×처리단가)를 곱한 값에 부담금 징수요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
- 1개소당 연간 처리량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량을 준용하고, 추계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처리단가도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단가를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신설 예정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 2025~2029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소각 시설	개소수(A, 개소)	3	6	9	12	15	-
	1개소당 처리량 (B, 톤/년)	30,698	30,698	30,698	30,698	30,698	-
	처리 단가(C, 원/톤)	311,298	317,836	324,192	330,676	337,290	-
	소계 (D=A×B×C, 백만원)	28,668	58,541	89,568	121,813	155,311	453,901
	부담금 (E=D×10%, 백만원)	2,866	5,854	8,956	12,181	15,531	45,388
매립 시설	개소 수(F, 개소)	1	2	3	4	5	-
	1개소당 처리량 (G, 톤/년)	77,625	77,625	77,625	77,625	77,625	-
	처리 단가(H, 원/톤)	224,222	228,931	233,509	238,179	242,943	-
	소계 (I=F×G×H, 백만원)	17,405	35,541	72,504	92,443	94,292	312,185
	부담금 (J=I×10%, 백만원)	1,740	3,554	7,250	9,244	9,429	31,217
합 계(K=E+J, 백만원)		4,606	9,408	16,206	21,425	24,960	76,605

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09억 5,000만원, 2029년 1,401억 8,3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6,304억 6,300만원(연평균 1,260억 9,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기존의 85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A)	106,344	108,578	110,749	112,964	115,223	553,858	110,772
신설 예정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수입 추정액(B)	4,606	9,408	16,206	21,425	24,960	76,605	15,321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 (안 제26조의4) (C=A+B, 백만원)	110,950	117,986	126,955	134,389	140,183	630,463	126,093

주: 1.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3.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4.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환경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징수액 전액을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수, 처리량 및 처리단가의 증감에 따라 부담금 수입은 변동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지수현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35	zisu37@nabo.go.kr

[참고자료]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⁸⁾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개요

-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시설: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 이상
 - 소각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
 -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처리시설): 환경부 고시(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지자체장이 설치하는 경우)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현황(2022년)]

(단위: 개소)

구분	계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합계	196	90	94	12
규모이상	78	19	59	0
규모 미만(조례)	118	71	35	12

□ 주민지원사업 현황

① 주민지원기금

- (운영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기금 조성) ① 설치기관 출연금, ② 반입수수료 ③ 타지자체 가산금 ④ 기금운용 수익금, 타지자체 출연금
- (지원 대상)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 * 매립: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소각 등: 300m 이내
- (사업 종류)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그 밖에 고시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주민지원기금 운용 현황(2022년)]

(단위: 백만원)

조성 금액			집행 현황				
계	전년이월	당해조성	계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	기타
327,914	105,629	222,285	124,655	6,233	74,919	2,683	40,821

8)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제출자료

② 주민편익시설

- (설치 주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 (설치 재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20% 범위 내
(중전 10%에서 상향, 2020.12.10)
- (설치 방법)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분	계	시설 종류		
		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 및 매립시설
합계	86	43	10	33
수영장	18	12	1	5
다목적체육센터	12	5	2	5
헬스시설	11	7	—	4
사우나	8	—	—	8
찜질방	7	—	—	7
에어로빅시설	6	6	—	—
축구장	6	4	—	2
테니스시설	6	3	1	2
골프연습시설	3	3	—	—
독서실	3	3	—	—
다목적복지시설	2	—	2	—
풋살구장	1	—	1	—
족구시설	1	—	1	—
배드민턴장	1	—	1	—
게이트볼장	1	—	1	—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단위: 억원, %)

설치 현황			운영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A)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B)	비율 (B/A)	연간 운영비 (A)	연간 운영수익 (B)	연간 순수익 (B-A)
25,744	2,819	11	1,161	839	△322

③ 주민지원협의체

- (구성 방법)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과반수), 전문가 등 21명 이내
- (수행 기능) ①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기관 선정
- ② 주민편익시설 설치 협의
-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
- ④ 주민감시요원 추천
- (지원 내용)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평균 3,100만원)로 운영비 지원

④ 주민감시요원

- (구성 방법) 지원협의체가 추천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전문가, 폐기물 반입량·시간에 따라 최대 14명
- (수행 기능) ①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 ②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③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 ④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
- ⑤ 지원협의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한 사항
- (지원 내용) 수당* 지급(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전북 전주시는 1인당 연간 약 5,000만원 지급

□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⁹⁾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난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교: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